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35호
2.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 외 11명
3. 발의일자 : 2020. 2. 4.
4. 회부일자 : 2020. 2. 9.

II.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2.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3.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5.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타사항 :

○ 입법예고(2021. 2. 16. ~ 2. 23.)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김생환 의원 외 11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35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육·학예 관련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학예 관련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이하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¹⁾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2019~2020)]

구분	단체 수 ²⁾	지원금액(백만원)
2019	844	25,692
2020	442	13,843

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교육청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주로 학부모회,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 집중되어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학예 업무와 관련하여 비영리단체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³⁾,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⁵⁾ 등의 개별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와 달리 동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인바,

이는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별, 업무별, 기능별로 지원 사업과 대상을 일일이 개별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교육·학예와 관련해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따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증진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으로 사료됩니다.⁶⁾

-
-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3조(보조금의 지급) 교육감은 제10조와 제1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4)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및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6)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된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의 사회단체는 1,328개임.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 및 사업의 종료 후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275, 2021.2.17.).

2) 지원사업 선정(안 제7조)

- 동 조례안 제7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7)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

구분	공익 재단법인	공익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계
장학	817	9	0	1	0	827
학예	47	91	2	111	0	251
기타	4	33	3	166	44	250
계	868	133	5	278	44	1,328

금 관리 조례」 제2조에⁸⁾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보조금 선정에 있어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3) 사업평가 등(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교육감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7)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8)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공모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의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⁹⁾

○ 이는 「지방재정법」 제5조가¹⁰⁾ 교육감에게 부여한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항은 지방보조금이 객관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특정 사회단체 또는 특정 사업에 편중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경우 동 조례의 취지에 맞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9)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